分居한 都市長男夫婦의 扶養意識類型

—世代間 紐帶關係를 中心으로—

Supporting-Attitude Type of the Married Eldest Son and His wife Living Seperately from His Parent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林 春 喜
부교수 **鄭 玉 粉**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Choon Hee Lim
Associate Prof; **Ock-Boon Chung**

<目 次>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결과 및 논의
Ⅴ. 요약 및 결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upporting-attitude type of the eldest son and his wife living seperately from his parent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various degree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between the eldest son and his wife and his parents. For this study, the supporting-attitude types were classified into 4 types: these combine 2 types of residence (living together with the parents or living seperately from the parents) with 2 types of financial support (with without financial support). The concept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comprises three elements: objective solidarity, subjective solidarity (attachment and conflict), and consensual solidarity (filial oblig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6 couples living seperately from son's parents in Seoul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multiple discriminant analyses, one way ANOVA's, and the paired t-t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lthough the majority of the eldest sons live now away from the parental home, they expect to eventually live together with and support their parents financially. The majority of the wives, however, do not want to live together with their husbands' parents even though expecting to support them financially.

2. According to the discriminant analyses, the supporting-attitude types of the eldest

sons were discriminated by attachment and conflict, and those of their wives by conflict and obligation.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upporting-attitude types in term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general, the couples expecting to live together with the parents reported a higher degree of attachment, a stronger sense of obligation, and a lower degree of conflict than the couples expecting to live seperately from the parents.

4.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husbands and the wives were found in attachment, obligation, and conflict. While the husbands showed higher attachment and obligation than their wives, the wives showed higher conflict than the husbands. No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was found between the couples in objective solidarity.

Ⅰ. 문제제기

한 사회에서의 家族變動은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變動의 종류와 그 사회에 존재했던 傳統的인 家族形態의 變化에 달려있다고 할 때[1], 우리의 家族制度에 영향을 준 社會變動으로는 무엇보다도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産業化를, 家族形態上의 變化로는, 核家族化의 增加를 들 수 있다.

그런데 核家族化를 단순히 핵가족 또는 부부가족이 전체가족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만 준거를 삼는다면, 直系家族을 理想으로 하였다는 조선사회에서도 핵가족 또는 부부가족이 직계가족보다도 더 많았다는 사실앞[2,3]에서 産業化로 인한 家族變動이 核家族化라함은 그 설명력을 상실한다. 直系家族制의 家族理念을 기본틀로 하여 旣婚長男의 分家를 허용하지 않는 法制上의 現實情[4]을 고려할 때, 核家族化란 관습적으로나 法的으로 分家가 허용되지 않는 旣婚長男이 父母와 居住를 달리하여 따로 핵가족 즉 부부가족을 형성하는 旣婚長男의 分居[1]가 증가하는 경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5].

註 1) 기혼장남이 자신의 父母와 居住를 달리하여 독립된 家口를 형성한 것을 말한다. 分家가 허용되는 次男·三男과는 달리 長男의 경우 次·三男처럼 分家한 것인지 一時的인 독립가구인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잠정적인 용어로 分居라 한다(최재석, 현대가족 연구, 1982 : 126)

産業化와 都市化에 따라 증가한 長男의 分居경향은 최근 大邱市의 分居한 長男에 대한 조사[6]에서 分居한 長男의 거의 반 수가 부모와 같은 大邱市에 살면서도 分居하고 있었으며, 農村家族의 變化의 一面으로서 長男의 分居가 증가되는 현상이 언급되고 있다[7,8]. 그러나, 長男의 分居로 인한 家族形態上의 變化가 곧 家族關係에 대한 意識이나 行動上의 變化와 直結되는 것은 아니어서, 擴大家族의 意識과 紐帶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거나[9], 父母와 分居한 長男은 하나의 변경된 직계가족이라고 한다[10].

모든 자녀가 일단 결혼하면, 父母를 떠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며 사는 歐美社會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父母와는 별개의 家口를 형성하여 따로 살고있는 旣婚長男이 그 父母와 갖는 紐帶關係는 특히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그것은 우선 長男의 分居자체가 硏究對象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意義를 갖기 때문이다.

첫째, 直系家族을 한국가족의 模型으로 볼 때, 旣婚長男은 直系 3 世代家族의 軸을 이루므로, 그러한 長男의 分居는 우리의 가족형태와 가족주기상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11]. 둘째, 次男이나 三男과는 달리 法的으로 금지되어 있는 長男의 分家가 사실상 分居形態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法制와는 다른 實際的인 家族變動의 一面을 드러내는 연구대상으로 주목된다. 세째로, 전통적으로 오늘날까지도 長男에 의한 同居扶養이 지배적이고 그러한 부양형태가 관습적으로나 관념적으로 기대되는 現實을 감안할 때, 현재 父母와

따로 살고 있는 分居한 長男이 어떠한 類型의 扶養意識을 나타낼 것인지 밝혀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分居한 長男과 父母와의 관계는 바로 旣婚子女와 父母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意義를 갖는다. 旣婚子女와 父母와의 관계는 家族의 發展的 生活週期에서 파생해 나가는 새로운 家族의 시작으로 心理的 문제를 내포한 人間關係의 再調整段階라 할 때[12], 旣婚長男은 分居라는 居住上의 分離를 통해 그 이전까지 父母와 공유하던 傳記的 觀點과 關聯性 體系에서 점차 父母와는 다른 觀點을 구성하는 傳記上의 分裂(biographical fission)을[13]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家口形態에 따라 家族員의 相互作用이 달라지듯이[14], 分居한 長男은 分居前과는 다른 種類와 强度의 諸紐帶關係를 父母와 맺게 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파악이 家族關係에 대한 硏究라는 측면에서 意義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分居長男에 대한 연구의 가운데 특히 扶養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分居한 長男이 조만간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父母扶養의 문제이다. 종래부터 旣婚長男이 父母와 함께 살면서 扶養도 專擔하는 直系家族이 理想視되어 온 사회적 배경 뿐만 아니라 대다수 老人扶養이 旣婚長男에 의한 同居扶養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5], 老父母들 또한 대개 長男과의 同居를 希望내지 選好하고 있다는 사실로[16~18] 볼 때, 관습이나 관념상 일차적인 부양책임을 갖는 자녀로 기대되는 부양자녀의 입장에 있는 旣婚長男이 分居상태에서 갖는 父母에 대한 扶養意識이 어떠한 類型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旣婚長男은 자신의 生殖家族을 이미 형성하였으므로 長男의 배우자인 婦人도 長男의 父母를 扶養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당사자이므로, 長男의 婦人의 扶養意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分居한 長男夫婦가 갖는 扶養意識은 父母와의 상호관계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바, 그것은 意識을 態度와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할 때, 態度처럼 扶養意識과 같은 意識이란 어떤 對象이나 狀況에 관한 비교적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으로서 개인의 반응형태의 先有傾向으로 특정대상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조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9].

分居한 長男夫婦와 父母와의 관계는 곧 성인자녀와 父母世代間의 紐帶關係로 파악되며[20], 紐帶關係는 상호협조·왕래·접촉같은 외현적인 행동적 관계인 客觀的 紐帶, 愛着·葛藤같은 感情으로서의 主觀的 紐帶, 子女로서의 父母에 대한 義務感과 같은 話題上의 合意정도로 파악되는 合意的 紐帶의 세가지 측면을 갖는다고 볼 때, 결국 分居한 長男夫婦가 父母에 대해 갖는 扶養意識의 類型은 長男夫婦가 知覺하는 父母와의 세가지 측면에서의 紐帶關係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本 연구는 分居한 長男夫婦의 扶養意識을 居住와 經濟的 扶養의 두 차원을 조합한 4가지의 類型으로 유형화하여, 長男夫婦가 지각하는 父母와의 諸 紐帶關係의 性格과 强度의 측면에서 파악하며, 紐帶關係의 어떠한 要素가 分居한 長男夫婦의 扶養意識型을 판별하는데, 의의있는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究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이러한 硏究目的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分居한 都市의 長男夫婦는 어떠한 類型의 扶養意識을 보이는가?

2. 分居한 長男夫婦의 扶養意識類型을 判別하는데 있어 有意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代代間 紐帶關係의 要素는 客觀的 紐帶·愛着·葛藤·義務感 가운데 어느 것인가?

3. 分居한 長男夫婦의 扶養意識類型에 따라 世代間의 紐帶關係 즉 客觀的 紐帶·愛着·葛藤·義務感에 있어서 差異가 있는가?

4. 分居한 長男夫婦間에는 世代間 紐帶關係인 客觀的 紐帶·愛着·葛藤·義務感에 있어서 差異를 보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世代間 紐帶關係(Intergenerational Solidarity)

家族內에서 맺는 父母子女關係가 時間에 따라 變化하고 發展하는 것을 Bengtson[21]은 世代間 紐帶關係로 표현하였다. 그는 또한 父母子女間의 世代間 紐帶係가 客觀的·主觀的·合意的인 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는데 客觀的 紐帶

는 왕래·방문등의 접촉활동과 경제적 도움·service의 교환등의 상호원조행동처럼 비공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차원을 망라하여 外顯的인 行動으로 파악되며, 主觀的 紐帶는 情緒的이며 感情的인 관계로, 合意的 紐帶는 여러가지 信念이나 志向에서의 의견일치, 즉 合意정도로 파악되는 관계이다. Bengtson의 세대간 유대관계의 model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유대가 상호의존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되는데 이에 대해 Atkinson[22]은 Bengtson의 이론적 model을 검증한 후, 객관적 주관적·합의적·유대관계는 유대감이라는 단일한 구성개념을 이루는 상호의존적인 차원이 아니므로 각각 별개의 독립된 차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Atkinson의 입장을 따라 本 연구에서는 世代間 紐帶關係를, 父母와 分居한 長男夫婦와의 관계의 凝集度(cohesiveness)로 이해하며, 客觀的 紐帶 主觀的 紐帶로서 愛着과 葛藤, 合意的 紐帶로서 義務感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

2. 客觀的 紐帶(Objective solidarity)

客觀的 紐帶는, 왕래나 방문등의 접촉행동과 경제적 도움 service교환등의 상호원조행동을 중심으로 本 연구에서는 分居한 長男夫婦가 長男의 父母와 갖는 외현적인 행동상의 관계이다.

父母와 旣婚子女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國內外로 특히 客觀的 紐帶關係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로 집중된 경향은, 산업화에 따른 가족원간의 地理的 分散·居住上 隔離가 증가하면서 그러한 地理的 또는 居住上의 分離가 곧 家族 및 親族관계의 斷切을 의미하는지를 實證的으로 검토하기 위한 시각에서 출발하여 조사가 단순용이하며 量化 측정이 가능한 실태조사에 치중되었다. 또한 Thompson[23]의 지적처럼, 전형적으로 父母와 成人子女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規範的이거나 機能的인 接近方法을 취함으로써 地理的 距離, 접촉빈도, 재화와 용역의 교환같은 客觀的 紐帶關係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先行硏究에서 分居한 長男家族과 父母와의 유대관계는 거의가 客觀的 紐帶關係에 대한 實態調査를 통해 擴大家族 내지 修正된 直系家族의 性格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언급은 엄밀하게 扶養子女인 長男夫婦의 扶養意識과의 관련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扶養子女로 기대되어 온 長男夫婦가 分居한 상태에서 父母와 맺는 객관적 유대관계가 특히 居住形式을 내포한 扶養意識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3. 愛 着(Attachment)

分居한 長男夫婦와 父母간의 主觀的 紐帶關係를 나타내는 변수로 本 연구에서는 愛着과 葛藤을 선정하였는데, 그것은 Bengtson[24]이 주관적 유대관계를 感情 또는 情意(affect)로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의 感情水準으로 파악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유아가 자녀의 愛着과는 달리 成人期子女의 愛着은 愛着感과 愛着行動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愛着行動은 객관적 유대관계에 해당되는 행동의 지표와 중복되는 까닭에 여기에서는, 分居한 長男夫婦가 父母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감정으로서의 愛着感을 愛着으로 보아, 主觀的 紐帶關係의 구성요소로 간주한다. 여기서 愛着이란, 특정인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자 누구보다 그 사람을 선호하며 접근하고자 하는 욕구로 그 사람과 강한 애정적 유대를 맺으려는 성향으로 정의한다.

成人期子女의 愛着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生涯槪念(life-span concept)으로 愛着이[25]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최근에 들어서이다. 母女간의 원조유형과 愛着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Thompson과 Walker에 의하면[26], 母女가 서로 비슷하게 물질적 도움을 주고 받는 互意的 관계에서는 서로가 같은 정도의 愛着을 나타내나, 물질적으로 어느 한 쪽이 의존하는 非互惠的 관계에서는 의존적인 입장이 愛着을 적게 나타낸다고 하였다. 成人子女의 愛着을 愛着感과 愛着行動으로 구분하여 老母에 대한 扶養行動과의 관련을 본 Cicirell[27]와 宋賢愛[28]에 따르면, 成人子女가 愛着感과 愛着行動이 많을수록 현재와 미래의 老母扶養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葛　藤(Conflict)

愛着과 함께 葛藤을 主觀的 紐帶關係의 구성요소로 파악한 것은, 父母子女關係처럼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人性전체가 몰입되는 일차적이고도 전면적인 관계에서는 愛着과 같은 親和의 감정과 葛藤같은 對立의 감정이 强度上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필연적으로 共存내지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29].

本 연구에서 葛藤이란, 分居한 長男夫婦가 父母와의 關係에서 知覺하는 葛藤으로 이것은 父母子女간의 상호작용속에서 발생하며 심리적 욕구나 가치관, 성격이나 여러가지 의견, 가족내 자원의 사용과 분배등 관계의 諸 측면에서 대립내지 충돌한다고 지각하는 심리적 불균형·부조화의 상태를 뜻한다.

成人子女가 老母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葛藤과 扶養行動에 관해 Cicirelli[30]와 宋賢愛[31]는 葛藤이 적을수록 현재와 미래의 扶養에 더 적극적이며, 葛藤이 많을수록 老母를 도와주고 난 후 否定的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며, 특히 우리의 경우 既婚아들이 딸보다 老母와 葛藤이 많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既婚子女와 父母와의 葛藤에 대한 연구는 姻戚인 姑婦간의 葛藤에 치중된 경향으로 姑婦葛藤은 대개 父母와 既婚아들이 同居하는 상황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이때 父母와 同居하는 아들이란 대개 長男인 것이다. 그러나 父母와는 分居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父母와 同居時와는 다른 종류와 强度, 표출방식상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葛藤은 常存한다. 특히 현재 分居한 長男夫婦의 立場으로서는 父母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葛藤이 居住形態와 直結된 扶養意識類型에 모종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

5. 義務感(Filial obligation)

세대간 유대관계中, 合意的 紐帶關係를 나타내는 것으로 子女로서의 義務感을 변수로 선정한 것은, 정치나 종교적 관행, 일반적 가치지향같은 家族外的인 신념이나 지향에서의 合意나 異意를 合意的 紐帶關係의 주요내용으로 언급한 Bengtson의 견해와 다소 差異가 있다. 그러나 合意的 紐帶라는 용어 그대로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가치관이나 지향에 대한 父母子女간의 合意程度로 이해할 때, 父母와 既婚子女間의 合意程度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話題를 변인으로 하여 合意的 紐帶關係의 파악이 可能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父母에 대한 子女로서의 義務感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의 親子關係에서 관념상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孝개념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그러한 義務感에 대한 父母와 子女 兩側의 合意정도로서 合意的 측면의 관계를 단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本 연구에서는 적어도 既婚長男을 둔 父母라면 50·60代이상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舊世代임을 감안할 때, 父母側의 子女로서의 義務感에 대한 意識과 期待가 높을 것으로 前提한다. 따라서 父母側은 이미 父母에 대한 子女로서의 義務感에 대한 肯定的인 認識과 期待가 높다고 전제할 때, 分居한 長男夫婦側에서 義務感을 많이 知覺할수록 合意的 紐帶가 높을 것으로 假定한다.

여기서 子女로서의 義務感(filial obligation)이란, 近住·왕래·접촉·보호·부양·경제적 지원등에 관련된 父母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成人子女로서의 책임의식을 말한다[32].

子女로서의 義務感이 老母扶養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宋賢愛의 연구결과는, 딸보다 아들 특히 長男이 義務感이 높으며 義務感이 많을수록 현재와 미래의 扶養에 적극적이며, 적을수록 扶養후에 否定的인 感情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 同居하는 直系 3世代家族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33], 현재 老父母·모시는 대다수의 長男은 전통적인 규범내지 관습에 따라 부양한다고 응답함으로써 義務感에 의한 扶養意識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分居한 長男夫婦가 父母에 대해 갖는 義務感과 扶養意識과의 관계를 검토한 先行研究는 없으나, 長男에 의한 同居扶養에의 期待와 規範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과, 長男과 맏며느리로서 長男夫婦가 義務感을 內面化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長男夫婦의 子女로서의 義務感과 扶養意識과의 관련은 매우 蓋然的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6. 扶養意識類型

本 연구에서는 分居한 長男夫婦가 長男의 父母

에 대해 갖는 扶養意識을 居住形態와 經濟的 扶養에 국한시켜 보고있는데, 이것은 그 두가지가 扶養의 形態와 內容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먼저 居住形態의 경우, 일반적으로 父母들은 旣婚長男과의 同居를 통해 경제적·신체적 부양을 받는 까닭에 扶養과 同居를 同一視 내지 未分化하는 경향이 있으나, 同居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扶養行爲가 동시에 총체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반면 別居扶養의 경우, 扶養의 여러 측면이 분리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分居한 長男의 父母와의 同居意識은 젊어서는 父母와 따로 살지만 父母老後에는 扶養을 이유로 同居하겠다는 一時的 別居型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父母인 老人의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長男과의 同居를 選好하며, 長男과의 同居를 통해 扶養을 받고 있으며, 「자식이나 손자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同居接觸型의 意識을 다른 국가의 노인들에 비해 가장 많이 갖고 있다[34].

同居扶養인가 別居扶養인가 하는 居住形態上의 扶養形式 못지 않게, 經濟的 扶養의 實質的인 內容과 관련된다. 老人問題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四重苦(가난·질병·고독·無爲)의 하나이며 父母의 경제적 능력유무에 따라 扶養성격을 띤 同居인지 단순한 同居인지가 구분된다. 현재 생활비마련에 대해 대부분의 노인(78.2%)이 자녀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35], 자녀에 의한 경제적 부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는 다르게 老人들은 子女와 同居를 희망하면서도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거나 실제로 同居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老後생활비 마련에 대한 사고방식에 있어서 自立型(40.3%)과 家族依存型(49.4%)으로 대별되고 있는 점에서도[36] 경제적 자립에 대한 老父母側에서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볼 때, 子女와의 同居·別居여부와는 별도로 老人들 자신의 經濟的 自立에 대한 認識이 높으며, 老後生活에서 經濟的 扶養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經濟的 扶養에 대한 意識은 居住形態와는 독립적인 차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本 연구에서는 居住形態와 經濟的 扶養의 2가지 次元을 조합하여, Ⅰ. 父母와 同居하면서 經濟的 扶養도 담당하려는 同居補助型, Ⅱ. 父母와 同居하지만, 父母스스로 경제적인 自立能力을 갖춰 經濟的 扶養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同居獨立型, Ⅲ. 父母와 따로 살면서 經濟的인 扶養을 담당하려는 別居補助型, Ⅳ. 父母와 따로 살며, 父母가 經濟的인 自立能力을 갖춤으로써 經濟的 扶養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別居獨立型의 네가지 유형으로 分居한 長男夫婦의 父母扶養에 대한 意識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本 연구의 대상은 親父母님이 적어도 한 분 이상 생존해 있으며 그러한 부모님과는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서울市에 거주하는 旣婚長男과 그 人婦으로 곧 分居해 있는 서울市의 長男夫婦이다. 本 연구는 166雙의 서울시의 分居한 長男夫婦의 응답에 기초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長男만을 조사하였는데, 分居한 長男은 30代가 62.7%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직업은 사무직이 가장 많고 전문직·관리직·기술직이 대부분이며,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이 78.3%, 월수입도 40만원 이상이 75.9%로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1) 客觀的 紐帶

객관적 유대를 측정하기 위해, 分居한 長男夫婦가 長男의 父母와 갖는 관계를 경제적 도움·접촉·왕래·여가활동등의 측면을 나타내는 현재의 행동에 관한 17개 문항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자주 취급되는 항목들로 각 문항의 응답은 5점척도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객관적 유대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비조사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α)로 측정되었으며 長男인 男便의 경우 α=.87로 婦人의 경우 α=.84로 나타났다.

2) 愛着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宋賢愛(1986)가 번안하여 사용한 2개 문항과, Cicirelli(1983)가 애착감의 4

요소로 지적한 감정친밀도·가치합의·행동합의·특성판단과 심리적 의존을 참작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척도로 5점에 가까울수록 애착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예비조사에 의한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α=.93으로, 부인의 경우 α=.91로 나타났다.

3) 葛 藤

葛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對人間의 葛藤尺度를 번안하여 사용한 宋賢愛(1986)의 5개문항과, 관계의 소원함. 가치관이나 종교, 성격상의 갈등 同居時 예상되는 葛藤등 葛藤의 소지가 많을 내용들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10개 문항을 합친 총 15개의 문항으로 된 5점척도이다. 葛藤尺度의 신뢰도는 長男夫婦가 똑같이 α=.89로 나타났다.

4) 義 務 感

長男夫婦의 子女로서의 義務感을 측정하기 위해, Seelbach(1978)가 子女로서의 義務感 期待尺度(Filial Responsibility Expectance Scale)로 사용한 6개문항을 長男夫婦의 입장을 고려하여 번안하고 부양책임에 대한 1개문항을 제작하여 만든 총 7개문항으로 된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남편이 α=.82 부인은 α=.78로 나타났다.

客觀的 紐帶, 愛着, 葛藤, 義務感척도의 妥當度는 각각 要因分析에 의해 검증되었다.

5) 扶養意識類型

本 연구에서 扶養意識은 長男夫婦의 父母에 대한 扶養形式에 관한 希望으로 父母와의 同居/別居의 居住形態와 父母에 대한 經濟的 補助/獨立이라는 經濟的 扶養의 2가지 次元을 조합한 4가지 類型을 그대로 單一項目으로 된 질문에서 선택지로 사용하였다. 4가지의 扶養意識類型은 Ⅰ. 同居補助型, Ⅱ. 同居獨立型, Ⅲ. 別居補助型, Ⅳ. 別居獨立型으로, 유형 Ⅰ. 同居補助型은 가장 直系家族的이며 유형 Ⅳ. 別居獨立型은 가장 核家族的인 扶養意識으로 간주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本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서울시에 거주하는 166雙의 分居한 長男夫婦의 응답은, 1987년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예비조사와 7월 27일에서 8월 23일까지의 本조사에서 각각 分析된 42雙과 124雙의 자료를 합친 것이다.

分居한 長男夫婦의 標集은 연구자가 직접 알고 있는 경우나 주변에서 해당사례가 있는 경우 부부중 어느 한 쪽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이삼일후 부부의 응답을 회수하였으며, 직장이나 가까운 주위에서 分居한 長男夫婦를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그러한 長男夫婦에 대한 설문지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200雙의 長男夫婦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166雙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과 부양의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로 처리되었다. 長男夫婦가 父母에 대해 갖는 客觀的 紐帶·愛着·葛藤·義務感의 諸 유대관계 가운데 부양의식유형을 판별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多變因判別分析(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註2)을 적용하였다. 長男夫婦의 扶養意識類型에 따라 客觀的 紐帶·愛着·葛藤·義務感에 있어서 差異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註3)을 하였다. 客觀的 紐帶·愛着·葛藤·義務感에 있어서 長男인 男便과 婦人間에 差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검사의 유의도(α level)는 0.05수준에서 검증되었다.

Ⅳ. 결과 및 논의

本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분석 결과를 연구문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註 2) 객관적 유대·애착·갈등·의무감은 판별변인으로 4가지 부양의식유형이 집단변인으로, Rao's V의 변인선별기준에 의한 단계적인 변인투입방식(stepwise method)을 적용하였다.

註 3) 객관적 유대·애착·갈등·의무감은 모두 等間척도이므로 4가지 부양의식유형에 따른 각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 분석에서와는 달리 객관적 유대·애착·갈등·의무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제각기 one-way ANOVA를 한 것이다.

1. 分居한 都市長男夫婦의 扶養意識類型

分居한 都市長男夫婦의 長男父母에 대한 扶養意識類型은 〈표 1〉에서와 같이, 長男인 男便의 경우 父母님과 同居하면서 經濟的 扶養 즉, 경제적인 보조도 해 드리겠다는 同居補助型이 55.4%로 가장 많은 반면, 맏며느리인 婦人의 경우 媤父母님과는 따로 살면서 經濟的으로 補助해 드리겠다는 別居補助型이 3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分居長男夫婦의 扶養意識類型

扶養意識	長男(男便)	婦 人
Ⅰ. 同居／補助型	55.4%(92명)	28.3%(47명)
Ⅱ. 同居／獨立型	20.5%(34〃)	18.7%(31〃)
Ⅲ. 別居／補助型	17.5%(29〃)	33.8%(56〃)
Ⅳ. 別居／獨立型	6.6%(11〃)	19.2%(32〃)
計	100%(166명)	100%(166명)

이러한 결과는 分居한 都市長男夫婦간에 扶養意識類型에 있어서 差異를 보여준 것으로, 남편인 長男의 扶養意識類型으로 볼 때, 현재의 分居가 一時的 別居의 성격을 띠며, 장차 父母의 부양을 위해 同居를 희망하는 擬制的 核家族(原田 尙, 1978)[37]내지는 空間的으로만 居住가 분리되었을 뿐 意識的으로는 아직도 直系家族的인 修正直系家族(崔在錫, 1982)으로서의 意味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共同扶養者인 婦人의 입장은 別居指向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아, 扶養意識類型으로 예측되는 分居長男夫婦의 장차의 居住形態나 현재 分居의 意味는 長男夫婦 兩側의 意思決定過程이 고려될 때, 보다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

長男인 男便의 경우, 대다수가 同居指向을 나타낸 것은 長男의 扶養意識 속에 同居／別居의 居住形態가 父母를 扶養하는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父母와 같이 산다 하더라도 경제적 부양의 부담은 지지 않길 원하는 同居獨立型이 조사대상자인 長男전체의 1/5과 同居扶養意識類型內 27%나 된다는 결과는 長男이 일차적으로는 居住形態를 중시한 부양의식을 갖지만 경제적 측면의 부양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同居扶養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것을 포함한 諸 측면의 부양이 동시에 이루어지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同居扶養에 대한 意味上의 分化 機微를 엿볼 수 있다.

別居補助型의 扶養意識을 가장 많이 나타낸 婦人의 경우, 사실상 媤父母님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보조하겠다. 同居補助型의 부양의식과의 差異는 약 5%로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또한 居住形態에 국한시킬 때, 同居指向(47%)과 別居指向(53%)으로 대별된다. 이것은 맏며느리의 입장에서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의 扶養義務는 우선적으로 인정하지만, 居住形態에 있어서는 兩價的(ambivalent)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婦人에 대한 背景質問 가운데 현재 分居生活에 대한 滿足與否에 대해 62%가 만족으로, 38%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註4) 分居를 경험한 입장에서는 媤父母와의 別居를 통해 만족스러운 分居生活을 지속하면서 經濟的 扶養의 책임만을 지고자 하는 意識이 많으나, 그에 못지 않게 媤父母와 同居하면서 경제적 부양도 담당하겠다는 意識도 상당수 갖고 있다. 分居를 경험중인 婦人이 別居補助型의 扶養意識을 가장 많이 나타낸 것은, 媤父母와 따로 사는 것이 帶關係를 손상시키지 않는 정도로 적당한 心理的 距離도 유지시킨다는 意識(Rosenmayr, 1985)[38]과도 직결된 것이 아닌가 한다.

2. 分居한 長男夫婦의 扶養意識類型의 判別에 대한 客觀的 紐帶·愛着·葛藤·義務感의 影響力

分居한 長男夫婦의 扶養意識類型의 判別에 미치는 諸 紐帶關係의 影響力을, 多變因判別分析(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을 통해 알아 본 결과 〈표 2, 3〉에서 보듯이 長男의 경우 愛着과 葛藤이 扶養意識類型의 判別에 통계적으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判別力에 있어서 相對的 寄與度는 標準化判別函數係數로 볼 때, 愛着이 가장 判

註 4) 조사대상자의 배경질문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 있으나 본고에서는 표의 제시를 생략하였다.

〈표 2〉 長男의 부양의식 유형판별을 위한 단계별 변인투입

Step	투입변수	Rao's V	Significance	Change in V	Significance
1	愛　着	38.87	0.001	38.87	0.0001
2	葛　藤	51.54	0.001	12.67	0.0001

〈표 3〉 長男의 標準化判別函數係數

변　수	제 1 함수
愛　着	0.62074
葛　藤	−0.51461

〈표 4〉 婦人의 부양의식유형 판별을 위한 단계별 변인 투입

Step	투입변수	Rao's V	Significance	Change in V	Significance
1	葛　藤	52.92	0.0001	52.92	0.0001
2	義務感	70.86	0.0001	17.94	0.0005

〈표 5〉 婦人의 標準化判別函數係數

변　수	제 1 함수
葛　藤	−0.73467
義務感	0.43921

別力이 크며 葛藤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愛着과 葛藤에 의해 長男의 扶養意識類型이 정확히 분류된 백분율(Hit ratio)은[39] 44.58%로 偶然에 의한 判別度(Proportional chance criterian)인 37.93%보다 높게 나타났다.

婦人의 경우, 〈표 4〉, 〈표 5〉에서 보듯이 葛藤과 義務感이 媤父母에 대한 扶養意識類型의 判別에 의의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葛藤의 判別力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葛藤과 義務感에 의해 判別되는 婦人의 扶養意識類型이 실제로 정확히 분류되는 백분율(Hit ratio)은 39.76%로 偶然에 의한 判別度(Cpro.) 26.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長男의 判別分析결과에 있어서와 長男의 義務感이 아닌 愛着과 葛藤같은 主觀的 紐帶關係만이 扶養意識類型의 判別에 의의있는 변수로 나타났는가에 대해 몇가지 측면으로 추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조사대상자인 長男의 背景으로 볼 때, 직업·교육수준·수입정도로 보아 中間以上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하며 都市的이며 현대적·합리적인 意識을 소지할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父母에 대한 扶養意識에 있어서도 관습적이고 의식적인 義務感에 좌우되기 보다도 父母와의 직접적이고도 오랜 관계속에서 형성된 愛着과 葛藤같은 主觀的인 感情을 앞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義務感 아닌 葛藤이 判別力을 갖는 것에 대해, 長男과 父母와의 同居경험의 有無와 관련지어 본다면, 長男이 결혼직후부터 分居한 경우, 막연히 주위 사람들의 期待나 社會化를 통해 內面化된 義務感보다는 分居했다 해도 지속되는 父母와의 관계속에서 지각된 葛藤정도에 따라 扶養意識類型이 좌우되기 쉽다. 또한 父母와 同居하다가 分居한 경우, 父母와의 同居를 통해 義務感이 增減하는 强度보다는 生活共有로 인한 日常的인 접촉, 面接的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感情上의 親和나 對立같은 葛藤을 포함한 感情의 强度가 더 클 것으로, 따라서 扶養意識類型의 判別에 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다.

義務感이 長男의 扶養意識類型의 判別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長男이 다른 자녀에 비해 義務感이 높으며 義務感이 현재와 미래의 扶養行動에 영향을 준다는 宋賢愛(1986)의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長男이 義務感이 다른 자녀에 비해 높다는 것은, 直系家族制를 기본틀로 하고 있는 우리의 家族制度上의 背景과 그 속에서 일차적으로 부모부양의 책임이 기대되어온 長男의 위치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다. 本 연구에서와 같이 長男만을 대상으로 하여 出生順位가 統制된 경우, 長男들 內에서 義務感은 扶養意識類型을 判別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이다.

이때, 長男의 義務感과 扶養意識類型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推理해 볼 수 있다.

長男이라는 出生順位 ⟶ 義務感 ⟶ 扶養意識類型
(외래변수 : Extraneous Variable) (독립변수) (종속변수)

즉, 長男의 義務感과 扶養意識類型과는 실지 관계가 없으나, 長男이라는 出生順位 곧 外來變數(Extraneous Variable)에 의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虛僞關係(Spurious Relationship)(Rosenberg, 1968)[40]일 수 있다. 요컨대, 長男과 父母같은 親子關係에서는, 관습적으로 기대되고 강제적이며 의식적인 성격을 띠는 義務感보다는 父母와의 일차적이고도 오랜 관계의 역사속에서 형성·누적되어온 愛着과 葛藤같은 主觀的 紐帶關係가 扶養意識類型을 판가름지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특히, 愛着의 判別力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Cicirelli, 1983; 宋賢愛, 1986)에서 愛着이 성인자녀의 老母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부양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며, 生涯槪念(life span concept)으로서 愛着이 旣婚子女와 父母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유용하고 강력한 도구적 개념임을 시사해 준다. 愛着만큼 葛藤 또한 부양의식유형의 판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義務感처럼 사회적인 관념상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감정보다 葛藤같은 父母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感情이 실제적으로 부양책임을 갖는 자녀의 입장에서 한층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長男의 義務感이 判別力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고 해도 실제로, 義務感이 扶養意識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 本 연구에서 4가지로 類型化한 扶養意識은 希望의 次元에서 파악되었는데, 分居한 長男의 父母는 대개 50·60代의 생활수준은 안정되고 건강한 편으로 扶養時期는 현재와는 다소 시간적 거리가 있는 미래로 잠정적이고 불확실하므로 希望次元의 扶養意識에서는 父母에 대해 知覺하는 愛着과 葛藤같은 主觀的인 紐帶關係가 가장 중요할 수 있으나 父母의 신체적 부양까지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扶養問題에 당면했을 경우를 설정하여 類型化한 扶養意識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合意的 紐帶關係의 一面으로 파악한 義務感이 더 큰 영향력, 판별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意識이 곧 行爲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현실적인 扶養狀況에 직면하게 될 때 扶養意識은 愛着과 葛藤같은 感情的 次元을 떠나 자식으로서의 義務感과 같은 전통적인 관념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이다.

婦人의 判別分析결과에 대해 왜 맏며느리인 婦人의 扶養意識類型을 판별하는 데 있어 媤父母에 대해 지각하는 葛藤과 義務感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葛藤이라는 主觀的 紐帶關係가 가장 큰 판별력을 나타낸 것은, 맏며느리인 婦人과 媤父母와는 혼인으로 인한 姻戚關係임으로 하여 長男의 男便과는 달리 愛着보다는 葛藤의 多寡라는 측면에서, 남편의 부모와의 관계를 지각하며 扶養意識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葛藤이 婦人의 扶養意識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원인으로는 媤父母님과 同居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가정불화·고부갈등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러한 내용의 항목에 대한 婦人의 응답평균이 가장 높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媤父母님이라 하여 媤父와 媤母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媤母와의 관계에서 葛藤의 發生을 우려하는 婦人의 입장에서는, 媤父母의 老後扶養에 대한 意識에서 현재 媤父母와의 관계에서 지각되는 葛藤 뿐 아니라 예상되는 葛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男便의 경우와는 달리, 婦人의 경우 媤父母에 대한 義務感이 扶養意識類型의 判別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媤父母와의 關係는 혼인으로 인한 姻戚關係이기에 순수한 自發的인 感情에 앞서 관습적인 義務關係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맏며느리는 長男에게 주어지는 책임·의무·기대를 함께 감당하며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扶養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現存하는 우리의 父系直系家族制度下에서 맏며느리에게는 관습상으로나 관념상 媤父母에 대한 扶養義務가 期待되고 맏며느리 자신이 社會化를 통해 그러한 義務感을 內面化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척관계로 맺어진 맏며느리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관습적으로 기대되어온 義務感과 扶養意識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推理해 볼 수 있

〈표 6〉 長男의 扶養意識類型에 따른 諸 紐帶關係의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유도(df)	자승화(SS)	평균자승화(MS)	F	
객관적 유대	집단간	3	1666.75	555.58	4.517**	p<.01
	집단내	162	19924.60	122.99		
	계	165	21591.35			
애 착	집단간	3	2899.53	966.51	13.00***	p<.001
	집단내	162	12043.85	74.34		
	계	165	14943.38			
갈 등	집단간	3	2232.70	744.23	8.35***	p<.001
	집단내	162	14429.27	89.06		
	계	165	16661.97			
의 무 감	집단간	3	447.67	149.22	7.60***	p<.001
	집단내	162	3177.35	19.61		
	계	165	3625.63			

〈표 7〉 婦人의 扶養意識類型에 따른 諸 紐帶關係을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유도(df)	자승화(SS)	평균 자승화(MS)	F	
객관적 유대	집단간	3	1228.06	409.35	3.43*	p<.05
	집단내	162	19311.74	119.20		
	계	165	20539.80			
애 착	집단간	3	2083.93	694.64	7.84***	p<.001
	집단내	162	14348.51	88.57		
	계	165	16432.44			
갈 등	집단간	3	4021.98	1342.66	14.058***	p<.001
	집단내	162	15449.75	95.36		
	계	165	19471.73			
의 무 감	집단간	3	688.43	229.47	9.64***	p<.001
	집단내	162	3853.99	23.79		
	계	165	4545.42			

는데 맏며느리라는 조건이 그러한 관계를 강화시킨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맏며느리라는 며느리順位⟶義務感⟶扶養意識
(선행변수 : Antecedent Variable)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러한 推理에서 婦人의 맏며느리로서의 義務感이 扶養意識類型의 判別에 기여하는 변수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長男夫婦 모두 현재 父母와 맺고 있는 客觀的 紐帶關係는 判別力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分居한 長男夫婦와 그 父母가 맺고 있는 의 현적인 행동상의 관계는 扶養意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扶養意識類型에 따른 客觀的 紐帶·愛着·葛藤·義務感에서의 差異

扶養意識類型에 따른 客觀的 紐帶·愛着·葛藤·義務感에서의 差異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일원변

〈표 8〉 長男의 扶養意識類型에 따른 諸紐帶關係의 Scheffé Test 결과

諸紐帶關係	부양의식유형	평균(M)	Ⅰ	Ⅱ	Ⅲ	Ⅳ
객관적 유대	Ⅰ. 동거보조형	56.73			*	
	Ⅱ. 동거독립형	54.70				
	Ⅲ. 별거보조형	49.60				
	Ⅳ. 별거독립형	47.54				
애 착	Ⅰ. 동거보조형	50.66			*	*
	Ⅱ. 동거독립형	58.44			*	*
	Ⅲ. 별거보조형	50.39				
	Ⅳ. 별거독립형	47.72				
갈 등	Ⅰ. 동거보조형	35.34			*	*
	Ⅱ. 동거독립형	38.91				
	Ⅲ. 동거보조형	42.78				
	Ⅳ. 별거독립형	47.09				
의 무 감	Ⅰ. 동거보조형	29.25			*	*
	Ⅱ. ·거독립형	29.50			*	*
	Ⅲ. 별거보조형	26.14				
	Ⅳ. 별거독립형	24.18				

〈표 9〉 婦人의 扶養意識類型에 따른 諸紐帶關係의 Scheffé Test 결과

諸紐帶關係	부양의식유형	평균(M)	Ⅰ	Ⅱ	Ⅲ	Ⅳ
객관적 유대	Ⅰ. 동거보조형	55.52				
	Ⅱ. 동거독립형	56.75				
	Ⅲ. 별거보조형	50.80		N.S.		
	Ⅳ. 별거독립형	50.37				
애 착	Ⅰ. 동거보조형	55.19			*	*
	Ⅱ. 동거독립형	54.28				*
	Ⅲ. 별거보조형	48.60				
	Ⅳ. 별거독립형	46.62				
갈 등	Ⅰ. 동거보조형	35.08			*	*
	Ⅱ. 동거독립형	36.21			*	*
	Ⅲ. 별거보조형	43.82				
	Ⅳ. 별거독립형	47.28				
의 무 감	Ⅰ. 동거보조형	26.91			*	*
	Ⅱ. 동거독립형	25.12				*
	Ⅲ. 별거보조형	23.01				
	Ⅳ. 별거독립형	21.43				

량분석을 한 결과〈표 6〉,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長男夫婦 모두 扶養意識類型에 따라 네가지 유대관계에 있어서 각각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추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한 결과는 〈표 8〉,

〈표 10〉 分居한 長男夫婦間의 世代間 紐帶關係上의 t검증결과

紐帶關係		N	Mean	S D	T값	P
객관적 유대	男便(長男)	166	54.55	11.45	1.54	N.S.
	婦 人	166	53.21	11.16		
애 착	男 便	166	57.02	9.5	5.81***	p<.001
	婦 人	166	51.03	10.09		
갈 등	男 便	166	37.87	0.78	−2.79**	p<.01
	婦 人	166	40.72	0.85		
의 무 감	男 便	166	28.48	0.37	8.23***	p<.001
	婦 人	166	24.22	0.41		

〈표 9〉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長男의 경우, 客觀的 紐帶는 同居補助型이 別居補助型보다 많으며, 愛着과 義務感은 同居補助型과 同居獨立型이, 別居補助型과 別居獨立型보다 많고, 葛藤은 別居補助型과 別居獨立型이 同居補助型보다 많다.

婦人의 경우, 客觀的 紐帶에서는 어느두가지 扶養意識類型間에도 의의있는 차이가 없으며, 愛着과 義務感은 同居補助型이 別居補助와 別居獨立型보다 많고, 同居獨立型은 別居獨立型보다 많았다. 반면 葛藤은 別居補助型과 別居獨立型이 同居補助型과 同居獨立型에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대체로 分居長男夫婦가 同居補助型과 同居獨立型같은 同居指向인 경우 別居補助型과 別居獨立型같은 別居指向보다 애착과 의무감은 많고 갈등은 적은 경향을 보인다. 다만, 客觀的 紐帶의 경우, 長男夫婦 둘다 扶養意識類型에 따라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長男만이 同居獨助型이 別居獨助型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長男夫婦에 있어서 父母와 갖는 객관적 유대관계의 성격이 다르다는 意味로 파악된다. 男便의 경우, 父母와 갖는 행동상의 유대관계는 일종의 애착감정의 표현으로 扶養意識類型에 따라 구체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婦人의 경우 姻父母와 갖는 外顯的인 관계 즉, 객관적인 유대관계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扶養意識類型에 따라 정도의 差異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두가지 유형간에도 의의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分居한 長男夫婦間의 客親的 紐帶·愛着·葛藤·義務感에서의 差異

分居한 長男夫婦間의 客觀的 紐帶·愛着·葛藤·義務感에서의 差異를 각각 t test한 결과는 註[5] 〈표 10〉에서와 같이 객관적 유대에서는 夫婦間에 差異가 없으나, 長男인 男便이 婦人보다 자신의 父母에 대해 愛着과 義務感은 많고 葛藤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長男과 그 父母는 親子關係로, 姻父母와는 姻戚關係인 婦人에 비해 愛着과 義務感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맏며느리인 婦人이 남편에 비해 姻父母에 대한 葛藤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는 점은 며느리입장에서, 姻父母 가운데 특히 姻母와의 葛藤을 상당히 意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간접적으로 姑婦葛藤이 長男夫婦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임상적인 결과(Rhi, 1985)[41]로도 추리해 볼 수 있다. 결국, 맏며느리는 姻父母와 따로 살고 있다해도 長男인 남편보다 많은 葛藤을 지각하는 것은, 父系直系家族의 軸을 이루는 長男의 배우자에게는 특히 婚姻 그 자체가 姻家로의 婚入이라는 관념이 통용되어, 父系家族의 構造的 必然性에 기인하는 姑婦葛藤을[42] 포함한 葛藤이 불가피하게 常存하며 남편의 경우보다도 많게 지각된다고 볼 수 있다.

註 5) 객관적 유대·애착·갈등·의무감에 있어서 장남부부간의 t-test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本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分居한 都市 長男夫婦의 扶養意識類型은 夫婦간에 다소 상이한 差異를 보인다. 同居補助型의 부양의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分居長男의 과반수이상이 同居指向의 直系家族的인 扶養意識類型으로, 현재의 分居가 잠정적이며 一時的 別居의 성격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別居補助型의 부양의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며 別居指向이 우세한 婦人의 扶養意識과의 折衷 즉, 扶養意識에 대한 長男夫婦間의 意思決定, 意見調整이 고려될 때 보다 분명히 分居한 長男夫婦의 扶養意識으로 代表될 수 있으며 현재 分居의 성격도 선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

2) 分居한 都市長男夫婦의 扶養意識類型은 長男은 主觀的 유대관계인 愛着과 葛藤에 의해, 婦人은 主觀的 유대관계인 葛藤과 合意的 유대관계로 파악한 義務感에 의해 判別되며 가장 判別力이 큰 변수는 長男은 愛着, 婦人은 葛藤으로, 결국, 分居한 長男夫婦의 扶養意識類型의 判別에 있어서 長男父母와의 상호작용속에서 지각되는 애착과 갈등을 포함한 主觀的인 유대관계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3) 分居한 都市長男夫婦는 扶養意識類型에 따라 諸 유대관계에서 모두 差異를 나타내며, 長男夫婦가 모두 同居規助型과 同居獨立型과 같은 扶養意識을 갖는 경우 別居補助型과 別居獨立型의 경우에 비해 愛着과 義務感은 많고 葛藤은 적은 경향을 보인다.

4) 分居한 長男夫婦間에는 長男父母와의 객관적 유대관계의 정도에 있어서는 差異가 없으나, 主觀的 유대관계와 合意的 유대관계에 있어서는 差異가 있어 長男인 男便이 婦人에 비해 애착과 의무감은 많고 갈등은 적다. 이는 부양의식유형에 대한 파별력과 관련지어 볼 때 長男과 父母의 親子關係에서는 愛着이 유용한 설명개념인 반면 맏며느리와 媤父母간의 姻戚關係에서는 葛藤이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本 연구는, 任意的인 標集方法을 취한 까닭에 조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체로 中上에 속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2~3일의 간격을 두고 응답을 회수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응답상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世代間 紐帶關係에 대한 槪念化와 操作化에 대한 여러 연구들과의 合意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참 고 문 헌

1. Lauer, R.H.,(1977).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Allynand Bacon, Inc. trans. 정근식, 김해식,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서울 : 한울출판사, 1985.
2.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 일지사, 1983.
3.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 경문사, 1984.
4. 김주수, 친족상속법, 서울 : 법문사, 1984.
5. 최재석, 현대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1982.
6. 한유상, 도시장남가족의 분거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7.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 일지사, 1977.
8. 여중철, 한국농촌의 가족주기와 가족유형, 한국문화인류학, 9, 1977, 25~37.
9. 이효재, 도시인의 친족 관계, 서울 : 한국연구원, 1971.
10. 최재석, 전게서, 1982.
11. 윤종주, 우리나라 가족형태 및 가족주기에 관한 조사연구, 인구문제논집, 24, 1983, 89-122.
12. 이효재, 전게서, 1984.
13. McLain, R., Weigart, A. Toward aphenomenological sociology of family. In W.R. Burr et al. (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ume II.*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14. Goode, W.J. *The Family.* New Jersey: Prentice Hall, 1964.
15.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16. 김성순, 노인복지론, 서울 : 이우출판사, 1981.
17. 양 춘,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 서울 : 정음사, 1984.
18. 한남제, 한국도시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1984.
19. 전병재, 사회심리학, 서울 : 경문사, 1984.
20. Bengtson, V.L., Cutler, N. Generations and intergenertional relations. In R.H. Binstock (Ed.), *The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76.
21. Bengtson, Loc. cit.
22. Atkinson, P.M., Kivett, R.V., Campbell, T.R. Intergeneration solidarity. *Journal of Gerontology*, 41, 1986, 408~410.
23. Thompson, L., & Walker, A.J. Mothers and daughters: Aid patterns and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 1984, 313~322.
24. Bengtson, Loc. cit.
25. Knudtson, W.F., Life span attachment *Human Development*, 19, 1976, 182~196.
26. Thompson, Loc. cit.
27. Cicirelli, V.G.,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t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1983, 815~825.
28. 송현애,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29. 이기숙, 한국가정의 고부갈등발생원에 대한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30. Cicirelli, Loc. cit.
31. 송현애, 전게논문.
32. Seelbach, W.C.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 and realization. *The Family [Coordinator*, 27, 4, 1978. 341~350.
33. 윤종주,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6, 1982, 155~179.
3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 아산사회복지재단, 1984.
35. 36.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게서,
37. 原田 尙, 家族形態の 變動と 老人同居扶養, 社會學評論, 29, 1978.
38. Rosenmayr, L. Changing valu esand positions of aging in western culture. In J.E. Birren, & K.W. Schai (Ed.), *Handbook of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Van Nost rand Reinhold. 1985.
39. Hair, J.F., Jr., Anderson, R.E., Tatham, R.L., Grablowsky, B.J. *Multivariate Data Analysis*, 1st ed., Oklahoma: Petroleum Publishing Company. 1979.
40. Rosenberg, M. *The Logic of Survey Analysis* New York: Basic Books, Inc. 1968.
41. Rhi Bou-yong. Confucianism and Mental Health in Korea. In W.H. Slote (Ed.), *The Psycho-Cultural Dyamics of the Confucian Family: Pastand Present*. 유교권 가족의 문화심리적 구조 : 과거와 현재, 서울 : International Cultural Society of Korea. 1986.
42. 이광규, 전게서.